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등을 경범죄에 추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8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3.
3. 회부연월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 침입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기구를 은닉·휴대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못된 장난 등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 조문의 ‘못된 장난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흥기를 내보이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해도 처벌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3,116건으로 2022년 2,463건 대비 27.9% 늘었습니다. 2011년 8명이던 공무원 자살 순

직 신청자 수는 2023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의 한 주무관이 김포한강로 부근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와 관련해 50건에 달하는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폭언·흥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폭언·흉기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행위를 경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칼·쇠몽둥이·쇠톱 등을 내보이거나,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1호의2, 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생략)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 4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신 설>

<신 설>

2. (생략)

③ _____

1. (현행과 같음)

1의2. (업무방해)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지니고 이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의3. (업무방해) 몃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
를 방해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의3을 살펴보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은 공무원 등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공무수행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모욕, 손괴 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¹⁾, 몹시 거친 말과 행동 중에는 「형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참고로,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은 폭언 등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2018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됨²⁾.

1)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의3을 통해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목적, 규율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경범죄 처벌법」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그 전 단계에서 발견하고 이를 제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법」 등에서 정한 범죄유형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점에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호소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방적 성격에 따라 경찰행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도 다수 규율하고, 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따라 형법상 범죄행위보다 불법성이 낮지만 사회질서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판시한바 있음³⁾.

다만, 악성민원에는 살해협박, 책상을 집어던지는 행위,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⁴⁾ 그 행위의 위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4)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총 2,784명의 악성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의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

협성이 높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위법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의3에서 정한 행위는 경범죄보다 일반 중범죄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칼·쇠몽둥이·쇠톱 등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등을 방해한 경우는 「형법」 제144조제1항⁵⁾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범죄 처벌법」에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합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45

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음.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항의 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이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7. 2. 보도자료, “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했더니, 폭행·협박이나 상습·반복 민원 90%에 육박...”

5)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